

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정 | 2006. 10. 13 | 조례 제 837호 |
| 개정 | 2010. 10. 4 | 조례 제1104호 |
| 일부개정 | 2012. 12. 11 | 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15. 7. 6 | 조례 제1474호 |
| 일부개정 | 2017. 10. 2 | 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19. 10. 10 | 조례 제1964호 |
| 일부개정 | 2020. 5. 15 | 조례 제2028호(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21. 2. 19 | 조례 제2109호 |
| 일부개정 | 2023. 6. 30 | 조례 제2422호 |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제2조(주민지원기금의 설치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(이하 “주민지원기금”이라 한다)을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21. 2. 19>

1. 용인환경센터: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
2. 수지환경센터: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
3. 용인에코타운: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기금

제3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 ① 시장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20. 5. 15, 2021. 2. 19, 2023. 6. 30>

1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「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

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감면한 사항은 제외한다.

2. 삭제 <2023. 6. 30>
3. 삭제 <2023. 6. 30>
4. 주민지원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
5.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6. 용인시의 출연금
7. 다른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출연금

③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<신설 2021. 2. 19, 개정 2023. 6. 30>

1. 삭제 <2023. 6. 30>
2. 주민지원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
3. 음식물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종량제 수수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4. 용인시의 출연금
5. 다른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출연금

제4조(주민지원기금의 용도)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9. 10. 10, 2021. 2. 19, 2023. 6. 30>

1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업
2. 홍보활동,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경비
3. 각 환경센터 및 용인에코타운의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충당금
4. 영 별표 3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복리증진사업: 지역주민 건강검진,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, 공용 CCTV 설치, CPTED 및 방범설비 지원, 지역 일자리창출 교육(청·장·노년층), 환경오염 저감 사업, 문화·화합·체육 행사 지원,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자 등 지원사업

나. 육영사업: 초·중·고등학교(영유아 보육시설 포함)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또는 운영지원, 분야별 지역 영재 지원 사업

다. 소득증대사업: 부동산임대업, 숙박업, 판매업 등 지원사업

제5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①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안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,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할 수 없거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>

③ 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안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그 지역의 여건,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각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여 지원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및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>

④ 제2항 단서규정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. <개정 2015. 7. 6>

1.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(냉·난방설치사업을 포함한다)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제목개정 2015. 7. 6]

제6조(주민지원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관(이하 “기금운용관”이라 한다) 및 주민지원기금 출납원(이하 “기금출납원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. <개정 2015. 7. 6, 2021. 2. 19>

1. 기금운용관: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부서의 장
2. 기금출납원

가.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기금: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

당 팀장

나.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지원기금: 음식물자원화 업무 담당 팀장

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③ 삭제 <2019. 10. 10>

④ 삭제 <2019. 10. 10>

[제목개정 2015. 7. 6]

제7조(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서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1. 주민지원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3.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

③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(주민지원기금의 지원중단)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제4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. <후단신설 2010. 10. 4>

제9조(심의회 의 구성)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

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촉위원의
성별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<개정
2015. 7. 6, 2021. 2. 19>

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국·
소장이 된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0. 2>

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다음 해당하는 사람
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0. 4, 2015. 7. 6>

1. 당연직 :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부서의 장,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지역
구 시의회 의원
2. 위촉직 :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,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
민간전문가 3명

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10. 4, 2015. 7. 6>

1. 당연직 : 해당 직위 재임기간
2. 위촉직

가.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: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

나. 민간전문가 위원 :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 가능

제9조의2 삭제 <2019. 10. 10>

제9조의3 삭제 <2019. 10. 10>

제10조(심의회 의 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
2015. 7. 6>

1.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(계획변경 포함)에 관한 사항
2.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
3.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심의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5. 7. 6>

제11조 삭제 <2019. 10. 10>

제12조(간사 및 서기) 심의회 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1
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, 서

기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실무관으로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제13조 삭제 <2019. 10. 10>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0. 10. 4 조례 제110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5. 7. 6 조례 제147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⑦4 까지 생략

⑦5 「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2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⑦6 부터 ⑧3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10. 10 조례 제196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5. 15 조례 제2028호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
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
감면한 사항은 제외한다.

부칙 <2021. 2. 19 조례 제210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6. 30 조례 제242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
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(제6조제2항 관련)

| 연월일 | 예 금 | | | | 인 출 | | 잔 액 |
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재 원 | 예금종류 | 금 액 | 이 율 | 적 요 | 금 액 | |
| | | | | | | | |

[별지 제2호서식]

주민지원기금 지급대장(제6조제2항 관련)

| 연 월 일 | 적 요 | 채 주 | 지 급 액 | 잔 액 |
|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
| | | | | |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5. 7. 6>

현 금 출 납 부(제6조제2항 관련)

| 연월일 | 적 요 | 수 입 | 지 출 | 잔 액 | 잔 액 | |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| | 담당자 | 팀 장 | 과 장 |
| | | | | | | | |